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간의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양해각서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평등·상호주의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 기관의 식품안전기준 및 시험법(이하 “식품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에 대한 정보공유, 경험 공유 및 조화를 희망하고, 식품안전기준 분야에서 양 기관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기원하면서,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 1 항 기본원칙

양 기관은 동 양해각서와 자국의 관계 법령 및 위생·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(SPS협정)에 따라 식품안전기준 분야의 협력을 증진해 나아가기로 한다.

제 2 항 협력분야

1. 양 기관은 한국의 식품 등의 공전과 중국의 식품안전표준 범위내의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협력한다.
2. 양 기관은 학술협력을 위해 인적 자원을 교류한다.

제 3 항 한·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

1. 양 기관은 한·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동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추진상황을 검토하며 기타 동 양해각서와 관련되는 사안들을 논의한다.
2. 협의회의 대표는 양 기관이 지정한 대표자가 참석한다.
3.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. 필요시 양 기관은 기타 수단을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.

4. 협의회 회의별 구성과 의제는 양 기관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5.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연락관을 지정한다.
한국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을, 중국측은 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과학교육국제합작처를 연락관으로 한다.

제 4 항 비용부담

1. 각 기관은 동 양해각서 상의 협력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.
2. 양 기관이 협의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측의 요청에 따라 타방측이 제공하는 지원의 비용은 요청측이 부담한다.

제 5 항 정보의 공개

양 기관은 동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수행과정에서 타방측이 전달하는 비밀정보를 그 타방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. “비밀정보”는 양 기관에 의해 작성된 모든 기록물, 분석자료, 편집자료, 학술자료 및 기타 문서들과 양 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통합, 요약, 포함하거나 반영, 참조한 기타 모든 정보나 문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. 모든 보고서나 기타 출판물들은 공동연구로서 출판되어야 한다.

제 6 항 이견의 해결

동 양해각서의 해석 및/또는 이행에 있어서 양 기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 7 항 일반 규정

1. 양 기관은 할당된 자금과 인력의 가용성에 따라 자국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동 양해각서에서 규정하는 활동을 이행한다.
2. 동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떠한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.

제 8 항 효력, 개정 및 종료

1. 동 양해각서는 서명된 날부터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하다.
2. 동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서면동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.
3. 동 양해각서의 종료는 그 종료 통보 시 진행 중인 동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의 효력 또는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동 양해각서는 2015년 9월 10일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동등하게 유효한 한국어본, 중국어본,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.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
식품의약품안전처를
대표하여

백 선 희

중화인민공화국
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를
대표하여

崔永平